

【데이터 가치평가 지원】 참여기업 모집 공고(1차)

- 신용보증기금 연계 -

대구광역시와 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데이터 우수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우수 기업 데이터의 상업·전략적 가치평가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사업을 공모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23일

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- 가. 대구시·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·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성장 및 데이터 유통·활용을 촉진하고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함.
- 나. 데이터 가치 평가를 위해 ①사업성, 파급성,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업 선발, ②협력기관(신용보증기금) 수요기업 공유, ③데이터 가치평가, ④후속 금융지원 연계 등 지원

<지원혜택>

- ▶ (신보 보증상품) 최대 10억원 내 보증지원 : 보증비율 우대(95%), 보증료 감면(0.5%p)
- ▶ (K-DATA 사업) 가점 혜택 (①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·공급기업 가점 부여, ②DATA-STARs, ③DATA-Global 사업 공모 시), 지역설명회 및 사례공유회 시 기업 우수사례 공유

데이터 가치평가제도란?

소개	▶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법 및 모델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(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(이하 데이터산업법)」 제14조)	
평가기법	▶ 대상 데이터 대상으로 수익 ¹⁾ ·원가 ²⁾ ·시장 ³⁾ 접근법 중 사용가능한 모델을 활용하여 평가 1) 수익접근법 : 대상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데이터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2) 원가접근법 : 대상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지출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거나,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생산·구입하는데 지출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3) 시장접근법 : 대상 데이터와 같거나 유사한 데이터가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를 비교·분석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	
활용방안	▶ 데이터 가치평가 보고서는 보증, 투자 등 금융, 데이터 이전·거래, 경영 전략 수립 등 활용	
	목 적	세부내용
	금융	데이터의 담보권 설정, 투자유치 및 보증서 발급
	이전·거래	데이터의 매매, 라이선스 가격 결정
	전략	기업의 가치증진, 데이터의 상품화, 분사(spin-off),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
평가기관	▶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(주)나이스디앤비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정('23.3.2.)	

※ 상호협약에 의거, 신용보증기금 연계 진행

2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: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

나. 지원규모: 4건(20백만원) 내외 ※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다. 지원기간: 모집일로부터 ~ 2026. 7. 31. 까지(1차)

라. 지원대상: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*

※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으로 평균 매출액 등이 3,000억원 미만인 기업

세부요건

① 대구지역에 본사,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 (공고일 기준)

② 데이터 기업(데이터 수행인력 보유 및 관련사업 수행실적 등 증빙 필수)

※ 본 사업은 사업비 지급 형태가 아니며, 가치평가 비용을 진흥원(DIP)에서 부담

3 지원내용

가. 지원내용

구분	지원규모	지원내용		비고
가치평가 지원	4건	보증용	가치평가 비용 전액	기업 당 최대 500만원
		홍보용	가치평가 비용 전액	기업 당 최대 550만원

나. 지원절차

구분	지원절차	세부내용	소요기간
①	평가의뢰 및 사전검토	- 평가 대상 요건, 기본사항 검토 - 평가의뢰 및 상담(소요기간, 수수료 등)	1주
②	서류제출 및 접수	- 평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- 평가계약 체결(비밀유지 등)	
③	평가계획 수립	- 평가팀 구성, 평가 일정 계획 수립	
④	평가준비	- 평가 요인 관련 기본자료 수집 - 사업계획서, 기타 사전조사, 현장조사 대비	
⑤	킵오프 및 현장실사	- 평가 담당 분야별 질의 및 세부 내용 확인 - 추가 자료요청, 현장 실사 실태조사	1주
⑥	평가요인 분석	- 데이터 특성, 법적, 시장성, 사업성 분석 - 매출액 추정 등 평가 영향요인 결정	2~3주
⑦	데이터 가치산정	- 가치 금액 산출	1주
⑧	평가 결과 통보	-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	2~3주
⑨	사후관리	- 평가 결과 활용 현황조사	-

다. 후속지원

구분	기관명	주요내용
보증*	신용보증기금	▶ (보증한도) 데이터 가치평가 금액 이내(업체별 최대 10억원) ▶ (자금용도) 운전자금 ▶ (우대사항) 보증비율 우대(95%) 및 보증료 감면(0.5%p)
홍보**	신용보증기금	▶ 기업 홍보자료 및 투자유치활동 자료 등으로 사용가능

※ 보증 승인 여부는 데이터 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**별도 심사 결과**에 의함.

※ 상세 문의는 최종선정 후 신보 데이터가치평가 담당자 연락처 안내 예정

4. 기대효과

- 가. 데이터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를 통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의 유통·활용 기준을 근거로,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산업 내 경쟁력 확보
- 나. 高부가가치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·초기 중견기업 대상 데이터 가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,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**보증·대출, 투자를 받거나, 기업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**
- 다. 데이터 관련 과제 수행 시 가점 부여. K-DATA 주관 사업(3개 사업 해당) 등 향후 데이터 사업 신청 시 혜택 확대 검토 (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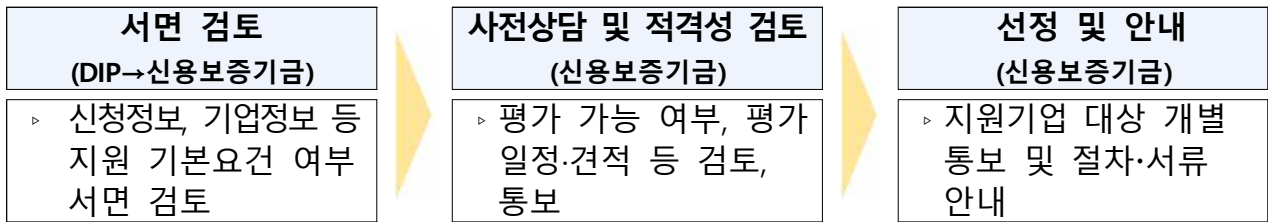
※ 현재기준 K-DATA 주관사업에만 해당

5. 신청 및 접수

- 가. 접수기간: 2026. 3. 23.(월) ~ 7. 31.(금)까지
 - ※ 예산 조기 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으며, 2차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
 - ※ 접수 후 평가기관(신용보증기금) 검토를 통해 선정 여부확정
- 나. 신청방법: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(✉ sima1118@dip.or.kr)
- 다. 제출서류: ①신청서, ②데이터 보유 설명서, ③IR자료(기존 보유분), ④신용보증기금 BASA 포털 내 AI 경영진단 신청
 - ※ 평가기관의 지원가능 여부 조회를 위해 BASA포털 AI 경영진단 사전 수행
- 라. 접수문의: 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X데이터활용센터 김다혜 선임
(✉ sima1118@dip.or.kr, ☎ 053-215-4955)

6.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가. 선정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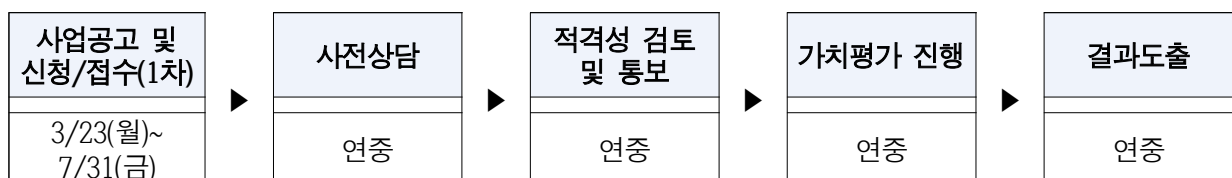
나. 평가방법 및 기준

- **(사전상담)** 신청기업은 평가기관(신용보증기금)과 평가목적, 평가대상 데이터의 가치평가 가능 여부 등 상담 및 건적서 수령
- **(적격성 검토)**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신청기업의 자격, 제출 서류 적격성 등을 검토 및 통보
- **(신청서 제출)** 신청기업은 사전상담을 거친 후 평가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

<적격성 검토 주요 확인사항>

- ▶ 신청기업이 지원대상(중소기업, 초기 중견기업)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
- ▶ 신청기업이 연속 지원, 중복수혜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▶ 제출요구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여부
- ▶ 제출요구 서류의 필수 작성항목에 대한 누락 여부
- ▶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보유 및 활용(또는 활용 예정) 여부
- ▶ 기타 지원 제한 대상 여부(휴폐업, 채무불이행, 부정당 제재,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)

다. 추진일정



※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.

- **(선정 및 안내)**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하여, 협약 준비 사항 및 향후 일정을 유선(문자 및 이메일)으로 안내
- **(선정 후 절차)** 지원기업은 선정 통보 후 평가기관 안내를 받아 평가 수행 및 평가 결과 활용

7. 유의사항

- 가. 신청내용이 타인·타사의 저작권 침해 및 허위로 판명될 경우,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있음.(선정취소)
- 나.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지원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기관 간(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상호협력) 협약에 의거 지원기관(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)이 부담함.
- 다. 본 지원사업 결과보고 후 우수성과사례로 선정되었을 시, 성과소개 및 발표, 홍보 요청에 협조할 것